

공 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17-1604호

**잠실5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안) 공람공고**

1. 건교부고시 제131호(1976.8.21.)에 따라 아파트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399호로 아파트개발기본계획이 고시된 송파구 송파대로 567(잠실동 27번지) 잠실5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당초 주민공람한(송파구 공고 제2014-1143호(2014.09.25)) 내용이 2017년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2017.09.06.) 심의결과(수권소위원회 재심의)에 따라 변경된 내용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공람합니다.

2. 본 공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주

민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송파구청 주거재생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7일

송 파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2017. 12. 07. ~ 2018. 1. 08.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나. 공람장소 : 송파구청 주거재생과(☎02-2147-2888)
잠실5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
(☎02-416-0871~3)
잠실3동 주민센터(☎02-2147-4660)

다. 공람사유 : 잠실5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변경)을 위한 주민공람

라. 공람내용 : 잠실5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안)

마. 기타사항 : 잠실5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구역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심의(2017. 09. 06) 의견에 따라 국제설계공모를 진행 중이며, 공모결과 및 향후 절차 이행과정(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등)중 토지이용계획, 건축배치, 예정법적상한용적률, 건축물의 층수, 예정세대수, 기타 계획내용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변경(안)

1. 정비사업의 명칭 : 잠실5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정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잠실 주공5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27번지 일원	353,987.8	증) 4,089.2	358,077.0	잠실아파 트지구(고 밀) 1주구

3. 정비사업의 계획(안)

가. 용도지역계획(안)

구분		면적(㎡)			비율 (%)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계		353,987.8	증) 4,089.2	358,077.0	100.0	-
주 거 지 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2,098.0	증) 6,871.0	18,969.0	5.3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21,923.6	증) 490.4	22,414.0	6.3	-
	제3종일반주거지역	319,966.2	감) 85,132.2	234,834.0	66.2	-
	준주거지역	-	증) 78,580.0	78,580.0	21.3	-
자연녹지지역		-	증) 3,280.0	3,280.0	0.9	

나. 토지이용계획(안)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계		353,987.8	증) 4,089.2	358,077.0	100.0	
정비기반 시설	소계	58,803.5	증) 28,794.5	87,598.0	24.5	
	도로	24,782.4	증) 17,635.6	42,418.0	11.8	
	공원	12,098.0	증) 6,871.0	18,969.0	5.3	
	학교	20,414.1	증) 1,999.9	22,414.0	6.3	초2, 중1
	공공청사	1,509.0	증) 2,288.0	3,797.0	1.1	파출소, 주민센터
	소계	295,184.3	감) 24,705.3	270,479.0	75.5	
획지	공동주택용지	278,324.9	감) 76,713.9	201,611.0	56.3	
	복합용지	15,162.9	증) 51,063.1	66,226.0	18.5	
	종교용지	1,696.5	증) 945.5	2,642.0	0.7	

다.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안)

1) 도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광로	2	20	58	간선도로	561	올림픽로 (잠실동 27-6)	올림픽로 (잠실동 20-8)	일반 도로		
변경	광로	2	20	62	간선도로	561	올림픽로 (잠실동 27-6)	올림픽로 (잠실동 20-8)	일반 도로		선형변경
기정	광로	2	32	58	간선도로	392	송파대로 (잠실동 27)	송파대로 (잠실동 27)	일반 도로		
변경	광로	2	32	65	간선도로	392	송파대로 (잠실동 27)	송파대로 (잠실동 27)	일반 도로		선형변경
기정	중로	1	414	20	간선도로	435	올림픽대로하단로 (잠실동 27)	올림픽대로하단로 (잠실동 27)	일반 도로		
변경	중로	1	414	24	간선도로	435	올림픽대로하단로 (잠실동 27)	올림픽대로하단로 (잠실동 27)	일반 도로		선형변경
기정	중로	3	430	13	집산도로	319	올림픽대로하단로 (잠실동 27)	올림픽대로하단로 (잠실동 27)	일반 도로		
변경	중로	3	430	14.5	집산도로	319	올림픽대로하단로 (잠실동 27)	올림픽대로하단로 (잠실동 27)	일반 도로		선형변경
신설	중로	2	a	15	집산도로	725	잠실동 27	잠실동 27	일반 도로		조성후 기부채납
신설	중로	2	b	18~56	보행자 전용도로	169	잠실동 27	잠실동 27	보행자전용 도로		조성후 기부채납

- 도로 결정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광로2-20	광로2-20	• 변경 (폭 62m, 연장 561m)	• 가·감속차로 설치에 따른 선형 변경
광로2-32	광로2-32	• 변경 (폭 65m, 연장 392m)	
중로1-414	중로1-414	• 변경 (폭 24m, 연장 435m)	
중로3-430	중로3-430	• 변경 (폭 14.5m, 연장 435m)	
-	중로2-a	• 신설 (폭 15m, 연장 725m)	• 주거용지와 복합용지 사이 도로 신설하여 주변 교통영향 최소화
-	중로2-b	• 신설 (폭 18~56m, 연장 169m)	• 한강으로의 접근성 및 조망 확보를 위한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2) 공간시설(변경)

가. 공원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⑤	-	어린이공원	잠실동 27일원	5,777.0	감) 5,777.0	-	서고 2005-399 (05.12.15)	폐지
변경	⑥	-	어린이공원	잠실동 27일원	6,321.0	감) 6,321.0	-	"	폐지
신설	A	-	근린공원	잠실동 27일원	-	증) 10,741.0	10,741.0	-	
신설	A	-	소공원	잠실동 27일원	-	증) 8,228.0	8,228.0	-	

※ 신설되는 근린공원내 문화시설 및 한강연결보행브릿지의 경우 정비계획내용에 따라 설치후 기부채납

- 공원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⑤	어린이공원	• 폐지(감 5,777.0㎡)	• 올림픽로변 가로활성화를 위해 올림픽로변에 설치되어있던 어린이공원 폐지
⑥	어린이공원	• 폐지(감 6,321.0㎡)	
A	근린공원	• 신설(증 10,741.0㎡)	• 한강과 연계되는 공원계획 및 한강공공성을 위한 문화시설 조성 및 한강보행브릿지 설치를 위해 신설
A	소공원	• 신설(증 8,228.0㎡)	• 학교 등 공공시설배치와 연계한 지구통경축 확보 및 학교환경 보호 위한 올림픽로변 공원 신설

3) 공공·체육문화시설(변경)

가. 학교(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학교	초등학교	잠실동 27 일원	14,414.1	감) 7,207.1	7,207.0	(74.12.06)	신천초
신설	②	학교	초등학교	잠실동 27 일원	-	증) 7,207.0	7,207.0	-	
변경	①	학교	중학교	잠실동 27 일원	6,000.0	증) 2,000.0	8,000.0	서고 2005-399 (05.12.15)	

※ 초등학교의 경우 부지는 관리청이 유상매입하고, 건물은 원인자부담으로 설치후 무상제공

※ 설치되는 중학교의 건물은 설치후 기부채납

- 학교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학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신천초	• 변경(감 7,207.1㎡) - 위치이동 및 면적감소	• 한강변 경관개선을 위해 저층인 학교시설을 한강변으로 배치 • 협소한 중학교면적 합리적으로 조정배치 및 초등학교 신설
②	초등학교	• 신설(증 7,207.0㎡)	
①	중학교	• 변경(증 2,000.0㎡) - 위치이동 및 면적증가	

나. 공공청사(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③	공공청사	파출소	잠실동 27 일원	393.0	증) 108.0	504.0	서고 2005-399 (05.12.15)	기부 채납
변경	④	공공청사	동사무소	잠실동 27 일원	786.0	증) 219.0	1,002.0	"	기부 채납
변경	⑤	공공청사	우체국	잠실동 27 일원	330.0	감) 330.0	-	"	폐지
신설		공공청사	-	잠실동 27 일원	-	증) 2,291.0	2,291.0		기부 채납

※ 파출소의 경우 부지는 관리청이 유상매입하고, 건물은 원인자부담으로 설치후 무상제공

- 공공청사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공청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③	파출소	• 변경(증 108.0㎡)	• 주변이용권을 고려하여 서측으로 이동 배치
④	동사무소	• 변경(증 219.0㎡)	
⑤	우체국	• 폐지(감 330.0㎡)	• 올림픽로변에 분산배치되어있는 공공청사를 주민 이용권을 고려하여 준주거지역 연접한 공공 청사 부지 내 신설
	공공청사	• 신설(증 2,291.0㎡)	• 준주거지역 상향에 따른 파급력 있는 공공시설 계 획 위한 공공청사 신설

라.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안)

1) 공동주택용지

구 분		설치기준	산 식	법정기준	계획 면적	비고
근린생활시설		-	-	-	3,800.00㎡	
복리 시설	관리사무소	50세대 이상	$10+(X-50) \times 0.05$	252.75㎡	400.00㎡	
	경로당	1,500세대 이상	서울시 주택조례 [별표1]	500.00㎡	1,200.00㎡	
	보육시설	1,500세대 이상	서울시 주택조례 [별표1]	725.00㎡	1,740.00㎡	
	작은도서관	1,500세대 이상	서울시 주택조례 [별표1]	298.00㎡	1,200.00㎡	
	주민공동시설	-	$50+0.1 \times (X-300)$	510.50㎡	800.00㎡	
	기타복리시설	-	-	-	12,660.00㎡	
	소계	-	-	-	18,000.00㎡	

※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부합여부

: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times 1.25 = (500 + 4,905 \times 2\text{㎡}) \times 1.25 = 12,887.5\text{㎡}$ 이상 < 18,000.0㎡ : 적합

2) 복합용지

구 분		설치기준	산 식	법정기준	계획 면적	비고
근린생활시설		-	-	-	0㎡	
복리 시설	관리사무소	50세대 이상	$10+(X-50) \times 0.05$	82.30㎡	100.00㎡	
	경로당	1,000세대 이상	서울시 주택조례 [별표1]	375.0㎡	500.00㎡	
	보육시설	1,000세대 이상	서울시 주택조례 [별표1]	580.0㎡	600.00㎡	
	작은도서관	1,000세대 이상	서울시 주택조례 [별표1]	203.0㎡	250.00㎡	
	주민공동시설	-	$50+0.1 \times (X-300)$	169.0㎡	300.00㎡	
	기타복리시설	-	-	-	6,750.00㎡	
	소계	-	-	-	8,500.00㎡	

※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부합여부

: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times 1.25 = (500 + 1,076 \times 2\text{㎡}) \times 1.25 = 4,365.0\text{㎡}$ 이상 < 8,500.0㎡ : 적합

마.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안)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변경	잠실 주공5단지 주택재건축정비구역	358,077.0	-	-	송파구 잠실동 27번지 일원	45	-	-	45	-	

2) 건축시설계획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 최고층수		
	명칭	면적(㎡)				기준	정비계획	법정상한			
변경	A-1	201,611.0	잠실동27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	230%	284.78% 이하	299.93% 이하	35층이하		
변경	A-2	66,226.0	잠실동27번지 일원	공동주택 판매시설 업무시설 관광숙박시설 문화및집회시설	60%	230%	330.68% 이하	399.71% 이하	50층이하		
변경	A-3	1,320.0	잠실동27번지 일원	종교·근생시설	50%	250%	-	-	5층이하		
변경	A-4	1,322.0	잠실동27번지 일원	종교·근생시설	50%	250%	-	-	5층이하		
변경	A-5	1,002.0	잠실동27번지 일원	공공청사	관련 법규에 따름						
변경	A-6	504.0	잠실동27번지 일원	공공청사	관련 법규에 따름						
변경	A-7	7,207.0	잠실동27번지 일원	초등학교	관련 법규에 따름						
변경	A-8	8,000.0	잠실동27번지 일원	중학교	관련 법규에 따름						
변경	A-9	7,207.0	잠실동27번지 일원	초등학교	관련 법규에 따름						
변경	A-10	2,291.0	잠실동27번지 일원	공공청사	관련 법규에 따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 건립규모								
			구분		세대수		비율(%)		비고		
			계		6,404		100.0				
			공동 주택	분양	60㎡이하		472			7.3	
					60~85㎡이하		2,860			44.7	
					85㎡초과		2,457			38.4	
					임대	45㎡미만		615		9.6	
심의완화 사항			• 예정법적상한용적률 : A-1 299.93% A-2 399.71%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건축한계 선		한강변 연결 도로, 공공공지 연결 획지 및 공원 연결		· 경계선에서 10m · 경계선에서 3m · 경계선에서 6m				

바. 개발가능 용적률 산정(안)

1) 공동주택용지 - 제3종일반주거지역

구 분		산정내용			
토지이용계획	계(구역면적)	택지(공동주택)	정비기반시설	기존기반시설내 국공유지	유상매각 (초등학교2, 파출소)
	268,627㎡	201,611㎡	67,016㎡	18,760.3㎡	14,918㎡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토지 67,016㎡, 건축물(토지환산) 3,041.9㎡ · 순부담 면적 = (67,016+3,041.9) - 14,918 - 18,760.3 = 36,379.6㎡(13.57%)			
개발가능 용적률 산정	개발가능 용적률	· 개발가능용적률 = 계획(기준)용적률 + 기부채납완화용적률 = 230% + 54.78% = 284.78%			
	기부채납 완화용적률	· 기부채납 완화용적률 = 계획(기준)용적률 + (기준용적률 × 1.3α) = 230% + (230% × 1.3 × 0.183209) = 284.78% ※ α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나머지 면적 대비 공공시설로 제공한 면적 비 = 36,379.6㎡ ÷ (201,611㎡ - 3,041.9㎡) = 0.183209			
		건축물 기부채납 검토	■ 환산부지면적(㎡) = $\frac{\text{공공시설등 설치비용(원)}}{\text{용적률을 완화받고자 하는 부지가액(원/㎡)}}$ ■ 한강연결보행브릿지 + 문화시설(공원내) + 공공청사(주민센터) + 신설중학교 - 한강연결보행브릿지 : 2,500㎡ - 문화시설(공원내) : 2,000㎡ - 공공청사(주민센터) : 2,500㎡ - 신설중학교 : 10,000㎡ - 환산부지면적 : 3,041.9㎡ → 표준공사비 × 연면적 ÷ 부지가액 = ((6,429,000×2,500) + (3,023,000×2,000) + (2,352,000×2,500) + (1,763,000×10,000)) ÷ 15,000,000 ※ 한강연결 보행브릿지 공사비 : 한강사업본부 시설관리부, “한강전망 보행데크 조성”(2011년도 정책자료집)-한강전망보행데크조성(성수,가양,서빙고 보행교) 사업비 평균값 적용 ※ 문화시설(공원내) 공사비 :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등 가이드라인”(2015)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박물관) 3,000㎡ 적용 ※ 공공청사(주민센터) 공사비 :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등 가이드라인”(2015) 동청사(주민자치센터) 2,000㎡ 초과 적용 ※ 신설중학교 공사비 : 2014년도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중학교) 적용 ※ 부지가액 : 공시지가 2배 적용(7,500,000원 × 2 = 15,000,000원)		
정비계획용적률		284.78%			
예정법적상한용적률		299.93% 이하			
소형주택건립용적률		7.575% 이상 (299.93% - 285.54%) x 0.5			

2) 복합용지 - 준주거지역

구 분		산정내용		
토지이용계획		계(구역면적)	택지(복합용지)	정비기반시설
		86,808㎡	66,226㎡	20,582㎡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토지 20,582㎡, 건축물(토지환산) 1,285.3㎡ · 순부담 면적 = 21,867.3㎡(25.19%)		
개발가능 용적률 산정	개발가능 용적률	· 개발가능용적률 = 계획(기준)용적률 + 기부채납완화용적률 = 230% + 100.68% = 330.68%		
	기부채납 완화용적률	· 기부채납 완화용적률 = 계획(기준)용적률 + (기준용적률 × 1.3α) = 230% + (230% × 1.3 × 0.336728) = 330.68% ※ α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나머지 면적 대비 공공시설로 제공한 면적 비 = 21,867.3㎡ ÷ (66,226㎡ - 1,285.3㎡) = 0.336728		
		건축물 기부 채 납 검 토	■ 환산부지면적(㎡) = $\frac{\text{공공시설등 설치비용(원)}}{\text{용적률을 완화받고자 하는 부지가액(원/㎡)}}$ ■ 공공청사 - 공공청사 : 8,000㎡ - 환산부지면적 : 1,285.3㎡ → 표준공사비 × 연면적 ÷ 부지가액 = (2,410,000 × 8,000) ÷ 15,000,000 ※ 공공청사 공사비 :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등 가이드라인”(2015) 복합청사(대형청사) 4,000㎡~10,000㎡ 적용 ※ 부지가액 : 공시지가 2배 적용(7,500,000원 × 2 = 15,000,000원)	
정비계획용적률		330.68%		
예정법적상한용적률		399.71% 이하		
소형주택건립용적률		34.52% 이상 (399.71% - 330.68%) x 0.5		

사. 정비사업 시행계획(안)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주택재건축	구역지정 후 4년 이내	잠실5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현황 : 3,930세대 ○ 계획 : 6,404세대 증) 2,474세대	

아. 공공시설 등 설치 및 제공에 관한 계획(안)

구 분		규모	용도	비 고
토지	도로	42,418.0㎡	-	· 정비구역면적의 11.8% · 도시계획시설 결정
	공원	18,969.0㎡	-	· 정비구역면적의 5.3% · 도시계획시설 결정
	초등학교	14,414.0㎡	-	· 정비구역면적의 4.0% · 도시계획시설 결정(2개소) · 초등학교의 경우 관리청이 유상매입
	중학교	8,000.0㎡	-	· 정비구역면적의 2.3% · 도시계획시설 결정
	공공청사	3,797.0㎡	파출소, 주민센터, 공공청사	· 정비구역면적의 1.1% · 도시계획시설 결정 · 파출소의 경우 관리청이 유상매입
건축물	중학교	연면적 10,000㎡ 이상	중학교	· 관할청에 기부채납
	문화시설	연면적 2,000.0㎡ 이상	문화시설(도서관) 등	· 근린공원내 · 관할청에 기부채납
	보행브릿지	설치면적 2,500㎡ 이상	보행브릿지	· 근린공원내 · 관할청에 기부채납
	공공청사	연면적 300㎡ 이상	우체국	· 공공청사내 설치 · 건축물 무상으로 이전설치 · 부속토지 관할청에 기부채납
		연면적 600㎡ 이상	파출소	· 무상으로 이전설치
		연면적 2,500㎡ 이상	주민센터	· 무상으로 이전설치
		연면적 8,000㎡ 이상	공공청사	· 복합용지내 설치 · 관할청에 기부채납

- 기부채납 순부담을 산정시 토지로 제공하는 공공시설 중 무상양도대상 제외
- 건축물로 제공하는 시설의 연면적은 전용·공용·부대시설을 합한 면적임.
- 제공하는 공공시설등은 저층부 지상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침상형 공지 등을 설치하여 채광, 접근성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 경우에는 일부 지하에 설치할 수 있으며, 제공 위치, 성능수준, 설비 등을 인수자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시 확정하여 기부채납

자.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안)

건립 위치	부지면적 (㎡)	동수	세대수	세대규모			연면적	비고
				전용면적	공급면적	세대수		
획지1	201,611.0	-	254세대	44.90㎡	60.23㎡	254세대	15,298.17㎡	지상층 의무연면적 15,272.0㎡
획지2	66,226.0	-	361세대	44.90㎡	63.38㎡	361세대	22,880.18㎡	지상층 의무연면적 22,857.90㎡

1) 소형주택 공급면적 산정

가. 공동주택용지

구분		주요 내용			
정비계획용적률		284.78%			
예정법적상한용적률		299.93%			
재건축 소형주택	용적률 증가분(%)	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 299.93 - 284.78 = 15.15			
	건립용적률(%)	15.15 × 0.5 = 7.575			
	의무 연면적 (지상층)	201,611.0 × 7.575% = 15,272.0㎡이상			
재건축 소형주택 확보계획		전용면적(㎡) / 공급면적(㎡)	세대수	지상층연면적(㎡)	비고
		44.90 / 60.23	254	15,298.17 (7.59%)	지상층의무연면적 : 15,272.0㎡

나. 복합용지

구분		주요내용			
정비계획용적률		330.68%			
예정법적상한용적률		399.71%			
재건축 소형 주택	용적률 증가분(%)	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 330.68 - 399.71 = 69.03			
	건립용적률(%)	69.03 × 0.5 = 34.52			
	의무 연면적 (지상층)	66,226.0 × 34.52% = 22,857.90㎡이상			
재건축 소형주택 확보계획		전용면적(㎡) / 공급면적(㎡)	세대수	지상층연면적(㎡)	비고
		44.90 / 63.38	361	22,880.18 (34.55%)	지상층의무연면 적 : 22,857.90㎡

4. 관계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5. 열람장소 : 주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송파구청 주거재생과 (☎ 02-2147-2896) 및 잠실5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 (☎ 02-416-0871~3), 잠실3동 주민센터(☎ 02-2147-4660)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 붙임



